

kiri Weekly

2011.7.4 제138호

이슈

보험모집자격관리제도와 시사점

포커스

자녀교육비, 체계적인 대비 필요

금융보험 해설

개인연금의 이해(1) : 3층·다층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국내금융 뉴스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가계 및 정부부채 증가, 경기회복 어려움 가중

유럽 _ 그리스의 회원국 탈퇴 및 유로화 회의론 대두

일본 _ 대지진의 후유증으로 도산 및 파산 기업 확산

중국 _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단체소송 급증과 임원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상승

_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 국내총생산의 1/4 초과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보험모집자격관리제도와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 권오경 연구원

요약

-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함.
 - 기존 등록시험이 한정된 문제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험설계사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험 관련 교재와 문제은행 운영방식 등을 개선함.
-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격시험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개선, 보험모집인의 윤리준수 유인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 등록자격시험의 경우 난이도 상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단계별 등록자격을 통한 방안 등이 전문성 제고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보수교육 의무화나 시험문항 내 보험인 윤리 및 법규준수 내용의 추가 등 일부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으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등록시험 개선의 목적이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이므로 보험상품 특성에 따른 단계별 등록자격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매상품의 특성 또는 복잡성에 따른 단계적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먼저 기본자격을 취득한 후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면서 상위 단계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될 것임.
- 아울러 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의 강화, 윤리준수 유도책 등이 필요함.
 - 최근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부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윤리준수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의 내용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과 설계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윤리준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음.

1. 검토배경



-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된 설계사 등록시험제도가 201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도 시작됨.
 - 등록시험제도 개선안은 시험 관련 교재 보완과 시험문제 형식 변경, 문제은행 관리방식의 변화 등을 담고 있는데, 이 중 윤리 및 법규준수 관련 내용의 추가는 소비자보호 목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시험 난이도 상향을 통한 전문성 제고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고는 달라진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제도를 포함한 국내 보험모집인 자격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서 해외 주요국의 보험모집인 자격관리제도를 자격시험제도, 보수교육, 윤리교육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국내 제도와 비교함.

2. 국내 보험모집인 자격관리제도



- 국내 보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보험연수과정 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자격취득 후에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의 회사 내 상품, 판매,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보험유통시장에 투입됨.
 - 보수교육 의무에 대한 규정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됨(2011. 1. 24부터 시행).

■ 보험설계사 등록시험¹⁾은 보험회사의 연수과정 이수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어 객관식 40문항 중 시험구분별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됨²⁾.

-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보험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목은 보험모집 관련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보험상품 등을 포함함³⁾.
- 생명보험의 경우 공통부문과 생명보험부문에서 70점 이상 득점하면 생명보험 자격을, 공통부문과 제3보험부문에서 70점 이상 득점하면 제3보험 자격을 얻게 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함.

〈표 1〉 보험설계사 등록시험 제도

구분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주관 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과목 및 출제범위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생명보험약관과 일반교양	손해보험, 제 3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손해보험약관과 일반교양
문항 수	총 40문항 공통: 1~20번 문항 생명보험: 21~30번 문항 제3보험: 31~40번 문항	총 50문항 공통: 18~33번 문항 손해보험: 1~17번 문항 제3보험: 34~50번 문항
응시 자격	연수기관(주로 보험회사)의 연수과정 이수자	
문제구성 및 출제방식	협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토대로 문제은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매 시험별로 시험문항을 추출하여 사용(객관식)	
합격 기준	시험구분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2011년 7월 24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60점으로 변경 예정)	

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2010년 4월 이후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계사등록시험 제도에 점진적 변화가 있었으며, 개선안은 크게 문제은행 방식의 변화, 교재개편, 단답형 문제의 배제 등이 포함됨.

- 지난해 4월에 개정(1단계)된 시험제도의 경우 기존 문제은행 시험문항 수를 늘렸는데 새로 추가된 문제은행 문항은 비공개임.

1)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은 모집인 등록제 시행 이후 재무부 주관으로 1972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협회가 시험업무를 주관하면서 등록관리도 위임받음(별첨 참조).
 2)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1-7호), 제4-3조 제2항(2011. 3. 22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24일부터 합격기준이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임.
 3)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7호), 별표 4(2011. 1. 24 개정)

- 아울러 모집인의 윤리준수 강화를 위하여 교재 및 시험문항 내용 중 보험인 윤리, 법규 등의 내용을 강화함.

〈표 2〉 보험설계사 등록시험 제도 개선 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2010. 4 시행	2015. 4 시행 예정 (또는 1단계 후 합격률 80% 도달 시)	미정
내용	· 문제은행 문항 수 확대 600문제(현)→700문제(2010. 4)→800문제 · 문제은행의 문제 추가 · 과목별 문제 추가 · 보험법규, 민원관련 문제 추가 · 교재개편 · 법규개정사항 등 반영 · 제3보험의 보완 등 편제개편	· 문제방식 변경 · OX 문제 삭제 · 3지선다형 문제의 4지선다 및 5지선다형 보완 검토	· 시험과목 및 시간 확대

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최근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⁴⁾에 따라 보험모집인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바람직한 효과가 기대되나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임⁴⁾.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2011. 1. 24 시행).
 - 최소 보수교육시간은 생명, 손해, 제3보험 설계사 모두 20시간이며 공통과목에는 모집 관련 법규, 윤리, 모집 관련 분쟁사례, 보험사기 예방, 보험 관련 세제 등이 포함됨.
- 이러한 보수교육은 시험제도 변화 이전에 진입한 보험모집인들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참조(<http://www.ctis.or.kr>)

3. 주요국의 보험모집인 자격관리제도



- 해외 주요국의 모집인력 관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취급 상품특성에 따른 단계별 자격 관리,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의 의무화, 윤리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가. 미국

- 미국의 보험판매자격 면허는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 해당 주의 판매자격을 취득해야 했으나,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에 기반을 둔 모집종사자면허모델법(PLMA: Producer Licensing Model Act)이 채택되면서 자격제도의 표준 및 지역 간 상호주의 기준이 마련됨⁵⁾.
 - PLMA는 2000년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면허조건의 간소화, 보수교육에 대한 지역 간 인정, 모집종사자 면허의 표준 등을 제공함.
 - 동 모델법에서 정의되는 주요 상품은 생명, 상해 및 건강, 재산, 특종(casualty), 변액 및 변액연금, 가계성상품임.
 - PLMA가 지역 간 자격관리제도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였다면 2002년에 채택된 통합자격표준(Uniform Resident Licensing Standards)은 지역 내 자격관리제도의 표준을 제시함.
 - 동 표준은 면허자격, 응시 전 교육, 면허시험, 정직성 점검 기준(integrity/background check standards), 면허신청 과정, 임명 과정, 보수교육 요건, limited line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함.
- 뉴욕주의 예를 살펴보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 통과자에 대한 보험감독청의 심사 후 자격을 갖게 됨⁶⁾.
 - 대리점 및 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취급상품에 따라 20~90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⁷⁾.
 - 뉴욕주의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은 PSI licensure: certification⁸⁾을 통해 이루어지

5) 여기서 producer는 보험대리점(agent)과 보험중개사(broker)를 의미함.

6) 각 주마다 면허 관련 규정은 다소 상이하나,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뉴욕주의 판매자격제도를 살펴 봄.

7) 생명보험, 상해 및 건강보험 자격의 경우는 20시간, 생명과 상해 및 건강보험 통합자격, 가계성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의 경우에는 40시간, 손해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의 경우에는 90시간임.

8) PSI licensure: certification(<http://www.psiexams.com>)은 20여개 주의 각종 자격증 시험대행기관으로 뉴욕주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을 실시함.

며, 생명보험, 상해 및 건강보험(Accident and Health), 손해보험(Property Casualty), 가계성 보험(Personal Lines), 그리고 생명보험과 상해 및 건강보험을 통합한 자격시험이 있음⁹⁾.

-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출제되는 방식으로 70%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함.

■ 아울러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agent) 또는 보험중개사(broker) 자격취득 이외에도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투자회사/변액상품 대리인 자격시험과 표준증권대리점주법시험에 합격해야 함.

- 변액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INRA에서 관리하는 표준증권대리점주법시험(Series 63)¹⁰⁾과 투자회사/변액상품 대리인 자격시험(Series 6) 또는 투자회사/변액상품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6)을 통과하여 FINRA에 등록해야 함.

■ 대리점과 중개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¹¹⁾이며, 자격갱신을 위해서는 보수교육(CE: Continuing Education)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이수는 자격갱신 조건이며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격기간 동안 15학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자격 갱신기간은 자격 발효일부터 유효기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학점은 누적됨.
- 변액보험판매 자격 관련 보수교육은 규제 부문과 회사 부문이 있는데, 규제 부문의 경우 등록승인일 2주년의 120일 내에 교육을 마쳐야 하며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내용은 크게 Compliance, 규제, 윤리, 판매행위 기준 등을 포함함.

■ 보험모집인의 윤리준수 강화를 위해서는 윤리교육 이외에도 불법행위 적발 시 대리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적극적 윤리준수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음¹²⁾.

9) 대리점 및 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생명보험(agent/broker examination series 10-51), 상해 및 건강보험(agent/broker examination series 10-52)분야, 이 두 분야를 통합한 시험(examination series 10-55), 손해보험(agent examination series 10-53, broker examination series 10-56), 가계성보험(agent/broker examination series 10-54)이 있음.

10) Series 63: Uniform Securities Agent State Law Examination, Series 6: Investment Company Products/Variable Contracts Limited Representative Qualifications Examination, Series 26: Investment Company Products/Variable Contracts Limited Principal Qualifications Examination

11) 대리점 또는 중개사 자격자가 생년이 짝수인 경우 돌아오는 짝수 년의 생일이 유효기간이 되며, 홀수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홀수 년의 생일이 유효기간이 됨.

12) 김호균·김지은(2010), 「최근 주요국의 보험영업 감독·규제 동향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회사나 대형독립대리점 등이 모집종사자를 채용할 때 퇴직 모집종사자의 채무불이행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보험모집인들에게 윤리준수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영국

- 영국의 경우 보험 모집종사자를 포함한 금융상품 판매자들의 자격관리는 금융감독청(FSA)이 하고 있으며, FSA가 인가한 교육기관 등이 모집종사자 교육과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함.

- BIRC(Insurance Broker Registration Council)과 PIA(Personal Investment Authority)에서 하던 보험 모집종사자 자격관리를 FSMA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후부터 FSA에서 통합 관리함.
 - 2005년 이전에는 일반손해보험 모집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기관인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에서 행하였으나 이후 규제업무가 FSA로 이관되면서 FSA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집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됨.

- 영국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판매상품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 자격취득과 중급 및 고급의 단계적 자격취득이 있음.

- 일반적인 기본자격으로 FSA의 규정에 따라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CFP(Certificate in Financial Planning)¹³⁾ 자격이 있으며, 이는 IFA를 포함한 모든 자문업무(adviser) 활동이 가능한 기본자격임.
- CFP 자격은 시험을 통해 주어지는데 응시자격 및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험은 온라인상으로 시행함¹⁴⁾.
- CFP는 5가지로 이를 모두 통과하여야 하고 각 시험이 하나의 학위로 인정되며, 추가적으로 CF6(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문)¹⁵⁾와 CF8(장기간병보험 판매)¹⁶⁾ 자격 등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더하거나 취급상품을 확대할 수 있음.

13) CFP가 보험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음.

14) CFP의 마지막 단계인 CF5는 온라인 형식이 아닌 written exam이고 CF1~4와 달리 응시횟수도 연 4회로 제한됨.

15) Certification in Mortgage Advi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과목(CF1, CF6)에 모두 합격하여야 함.

16) Certification in Financial Planning and Long Term Care Insuran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과목(CF1~5, CF8)에 모두 합격하여야 함.

〈표 3〉 영국 CFP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단계		시험유형	시험시간
기본 자격	CF1: UK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and ethics (금융시장, 규제, 윤리)	객관식 100문제	2시간
	CF2: Investment and risk(투자 및 위험)	객관식 100문제	2시간
	CF3: Financial Protection(보장성 상품)	객관식 50문제	1시간
	CF4: Retirement Planning(은퇴설계)	객관식 50문제	1시간
	CF5: Integrated Financial Planning(CF1~4의 종합적 지식)	논술형 2가지 case study	2시간
추가 자격	CF6: Mortgage advice(주택담보대출 자문)	객관식 100문제 시나리오 관련 5문제 (각 객관식 5문제)	3시간
	CF8: Long term care insurance(장기간병보험)	객관식 50문제 시나리오 관련 5문제 (각 객관식 5문제)	2시간

주 : CF5를 제외한 모든 단계는 7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며, CF5의 경우에는 55% 이상 득점하면 합격임.
 자료 : CII(<http://www.cii.co.uk>)

■ 상위자격으로는 중급자격인 DFP(Diploma in Financial Planning)와 고급자격인 ADFP(Advanced Diploma in Financial Planning)가 있으며, 이 두 자격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이수를 요함.

- DFP는 주요 자문영역에 넓은 범위의 지식 및 이해수준을 요구하며, 해당영역은 소득세(JO1), 신탁 관련(JO2), 법인세(JO3), 퇴직연금(JO4, JO5), 투자 관련(JO6), 규제환경(JO7) 등임.
- ADFP는 자문영역의 최고전문자격으로서 이 자격을 취득하면 Chartered Financial Planner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영역은 소득세 및 신탁관련 설계(AF1), 기업재무설계(AF2), 퇴직연금설계(AF3), 투자상품 설계(AF4), 재무설계과정(AF5) 등임.

■ CII에서는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라는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FSA는 2012년 말까지 IFA를 포함한 개인 금융판매채널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35시간의 CPD를 비롯한 새로운 전문성 조건을 요구할 예정임.

- 이 외에도 FSMA 2000이 보험모집인력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회사 내, 규제기관, 협회 등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¹⁷⁾.

- FSA는 소비자보호 관련 또는 보험모집인 윤리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IFA의 민원발생 및 유지율 등을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있음¹⁸⁾.

- 이 밖에도 FSA가 제시한 개인 금융판매채널이 2012년 말까지 만족해야 할 조건(the new professionalism requirements) 중에는 윤리준수에 대한 사항도 포함됨.

다. 일본

- 일본의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취득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수와 시험을 통해 단계적 · 체계적인 모집자격관리를 하고 있음.

- 보험상품 영업사원¹⁹⁾은 입사 후 3개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일반과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보험모집 자격이 주어지며 차례로 전문과정, 응용과정, 대학과정을 거치며 생명보험 전문성을 갖춘 FP로 인정받음.

- 기본자격인 일반과정 이후 상위자격 단계를 두어 전문성이 높아진 우수설계사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자격에 따라 별도의 칭호가 부여됨.

- 전문과정은 일반과정 지식을 기반으로 보험판매 관련 전문지식 및 주변지식 습득으로 고객요구에 기본적 대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합격자에게는 라이프컨설턴트(LC)를 칭호 부여함.
- 응용과정은 전문과정에 응용력 · 실천력을 양성해 재무설계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 습득이 목적이며 합격자에게 시니어 라이프컨설턴트(SLC)를 부여함.
- 대학과정은 응용과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서비스에 필요한 생명보험관련지식을 좀 더 전문적 수준으로 습득하여 진정한 생명보험 FP 육성이 목적이며 대학과정시험 6과목 모두 합격 시 토탈라이프컨설턴트(TLC)를 부여함.

- 2009년부터 생명보험모집인 자격 갱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compliance, 모집 관련 법령, 설명책임 관련 지식,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

17) BIBA(British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는 CII, AXA와 함께 중개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http://www.biba.org.uk/Training.aspx>)

18) 김호균 · 김지은(2010), 「최근 주요국의 보험영업 감독 · 규제 동향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19) 보험상품 영업사원이 보험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입사설명회 → 등록 전 연수 → 일반과정시험 → 합격 → 등록 → 등록 후 연수'의 과정을 거침.

- 보험모집인 윤리준수 유인 장치로는 생명보험협회의 ‘퇴사자 정보 등록제도’를 들 수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로 퇴사한 보험모집인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정보를 관리하면서 보험회사가 모집인을 채용할 때 참고함²⁰⁾.

4. 요약 및 시사점



-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인의 전문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관련 지식 및 경험, 책임감 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격시험관리 이외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윤리기준 준수 강화 분야가 고려되어야 함.
 - 최근 보험모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제도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상향에 초점을 맞춘 제도변화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보험모집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자격취득 후 사내 실무 및 보수교육, 경험 등에 의해 축적되는 것이며, 불완전판매 등 모집 관련 문제는 판매자의 도덕성 문제이므로 소비자보호 목적으로서는 오히려 법규준수 및 윤리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보험모집인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이 의무화²¹⁾되고 설계사등록시험 문항 중 보험인 윤리 및 법규준수 내용이 추가되는 등 바람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으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및 대상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험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매상품의 특성 및 복잡성에 따라 단계별 자격부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 <http://www.seiho.or.jp/individual/taisasya.html>

21)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참조(<http://www.ctis.or.kr>)

- 현재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자격에 해당되는 생명보험설계사자격 이외에 별도로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변액보험 이외의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음.
 -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체교육 이수 후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함.
 - 기본자격을 가진 보험모집인은 비교적 간단한 상품을 판매하고 퇴직연금 등 추가적 전문성을 요하는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추가적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특정보험종목만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자격도 고려가 가능함.
- 아울러 보험모집인들의 윤리준수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내용 중 해당 내용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윤리준수 서약의 의무화²²⁾, 설계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윤리준수 유도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윤리교육 이외에도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소비자가 보험모집인들의 윤리준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보험모집인들의 윤리준수 실질적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kiri](#)

22) FSA의 APER(Statements of Principle for Approved Persons)참조

 별첨

연도	주요 내용
1962	「보험모집단속법」 제정으로 모집인 등록제 시행
1972	“생명보험 모집인 교육 및 시험실시 요령(재무부)”에 의한 재무부 주관 시험실시
1977	“보험산업 근대화대책(재무부)”에 따라 협회 주관 공동시험 실시
1982	“보험모집인 관리제도 개선(재무부)”, “모집인 채용 부실관리에 대한 조치기준(한국보험공사)” 제정 및 시행으로 모집인시험 협회관리 지역 전국 확대
1998	모집인자격시험 문제은행 공개 및 확대개편
2003	「보험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시험합격 유효기간 연장(3월→1년) 및 동일 사 이중응시 허용
2004	제3보험업 신설(「보험업법」 개정, 2003년)에 따른 제3보험 모집자격 신설
2008	교차모집제도 시행으로 예외조항 신설 설계사시험 등록회사 일치규정 폐지(합격유효기간 이내)
2010	보험설계사 등록 시험제도 단계적 개선